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 4. 28.>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집단급식소	명칭			
	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본인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첨부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